

# 학생 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장 학생 인권 제12조(의사 표현의 자유)</p> <p>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,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장 학생 인권 제12조(의사 표현의 자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학교는 교지, <b>학생 전용 의견계시판</b> 등 학생 언론활동,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장 학생자치회 회칙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b>【근거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기학생인권조례</li> <li>○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</li> <li>○ 2020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본계획</li> </ul> </div> <p>제1절 총칙</p>	<p>제4장 학생자치회 회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삭제</p>
<p>제5장 학생 용의·복장 제1조 (복장) 복장은 규정된 교복을 입도록 한다.</p> <p>①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등·하교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. 여학생</p>	<p>제5장 학생 용의·복장 제1조 (복장) .....</p> <p>.....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도 남학생 교복과 같은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.</p> <p>4. 교복은 임의로 변형하여 입지 않는다.</p> <p>5. 여학생도 남학생의 조끼를 착용할 수 있다.</p> <p>8.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② 동복, 춘추복 착용시 항상 넥타이를 매도록 한다.</p> <p>③ 등교시간 외에도 다음 복장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1. 사치성 고가 의류</p> <p>2. 노출이 심한 의복</p> <p>④ 동복, 춘추복, 하복의 착용 기간은 기온에 따라 학생 개인이 선택하여 입는다.</p> <p>⑤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.</p>	<p>⑤ <u>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</p> <p>제14조 (징계의 종류)</p> <p>①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훈육.훈계</p> <p>2. 학교 내의 봉사</p> <p>3. 사회봉사</p> <p>4. 특별교육 이수</p> <p>5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</p>	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</p> <p>제14조 (징계의 종류)</p> <p>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<b>삭제</b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5조 (생활교육의 방법)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① 훈육.훈계 1.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훈계 조치한다. 3. 훈계 시 청소 활동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기간은 6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학교 내의 봉사 1.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 2.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3. 상담·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 사회봉사 1.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 2.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</p>	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5조 (생활교육의 방법) ..... ..... .....</p> <p>① 삭제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</p> <p>3.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</p> <p>나. 상담전문가,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</p> <p>4.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특별교육 이수</p> <p>1.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.</p> <p>2.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</p> <p>나.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기관(금연, 약물, 마약, 환각제, 알코올, 중독치료) 교육과정 이수</p> <p>3. 행동·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,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</p> <p>4. 상담 자원봉사자, 한국 청소년상담원,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</p> <p>5.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.</p> <p>⑤ 출석 정지</p> <p>1.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</p>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2.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'무단결석'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,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.</p> <p>3.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상담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.</p> <p>4.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(Wee 센터, 대안위탁 교육기관)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.</p> <p>5.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, 상담 담당교사(부장)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6조 (생활교육의 기준)</p>	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6조 (생활교육의 기준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행 위 내 용</th> <th>훈육 훈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7">1조 예절</td> <td>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3 언행이 불손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tr> <td>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</td> <td>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행 위 내 용	훈육 훈계	1조 예절	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	0	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0	3 언행이 불손한 학생	0	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	0	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	0	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	0	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	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행 위 내 용</th> <th>삭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7">1조 예절</td> <td>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</td> <td rowspan="7">삭 제</td> </tr> <tr> <td>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</td> </tr> <tr> <td>3 언행이 불손한 학생</td> </tr> <tr> <td>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</td> </tr> <tr> <td>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</td> </tr> <tr> <td>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</td> </tr> <tr> <td>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</td> </tr> <tr> <td>2조</td> <td>8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행 위 내 용	삭제	1조 예절	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	삭 제	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3 언행이 불손한 학생	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	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	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	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	2조	8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	
구분	행 위 내 용	훈육 훈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조 예절	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 언행이 불손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행 위 내 용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조 예절	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	삭 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 언행이 불손한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홍보된 학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조	8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개정안			
2조 준법	8	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	0	준법	출입한 학생	
	9	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	0		9	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
	10	조례 및 종례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	0		10	조례 및 종례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
	11	3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진이 없는 학생	0		11	3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진이 없는 학생
	16	교사에 대해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	0		16	교사에 대해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
	17	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	0		17	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
	18	월담	0		18	월담
	19	형법상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 및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	0		19	형법상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 및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
	20	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한 학생	0		20	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한 학생
	21	절도 및 도박을 한 학생	0		21	절도 및 도박을 한 학생
	22	상습적으로 고성 방가한 학생	0		22	상습적으로 고성 방가한 학생
	23	학생으로서 품위를 망각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야기했거나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학생	0		23	학생으로서 품위를 망각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야기했거나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학생
	24	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	0		24	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
	25	법령 및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	0		25	법령 및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
	26	지각, 조퇴 등 출결이 불량한 학생	0		26	지각, 조퇴 등 출결이 불량한 학생
	27	4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 학생 (산발적 결석 5일 이상)	0		27	4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 학생 (산발적 결석 5일 이상)
	28	3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	0		28	3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
	3조 근태	29	8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(산발적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)		0	3조 근태
30		7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	0	30	7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	
31		15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(산발적 무단결석이 20일 이상까지)	0	31	15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(산발적 무단결석이 20일 이상까지)	
32		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	0	32	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	
4조 약물	33	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	0	4조 약물	33	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
	34	재학 중 상습 음주 또는 흡연자	0		34	재학 중 상습 음주 또는 흡연자
5조 집단 행위	35	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씨클을 조직, 활동하거나 권유한 학생(폭력 단체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적용)	0	5조 집단 행위	35	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씨클을 조직, 활동하거나 권유한 학생(폭력 단체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적용)

현행				개정안			
		적용)					
6조 수업	36	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	0	6조 수업	36	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	
	37	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	0		37	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	
	38	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	0		38	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	
	40	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	0		40	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	
	41	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	0		41	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	
	42	단체 행동 및 수업 거부, 교사 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	0		42	단체 행동 및 수업 거부, 교사 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	
7조 넷넷	43	채팅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어폭력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학생	0	7조 넷넷	43	채팅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어폭력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학생	
	44	불건전 서적(외설물) 및 통신매체 등을 소지한 학생	0		44	불건전 서적(외설물) 및 통신매체 등을 소지한 학생	
	45	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	0		45	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	
	46	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 게시 및 홍보한 학생	0		46	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 게시 및 홍보한 학생	
	47	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	0		47	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	
	48	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	0		48	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	
	49	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	0		49	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	
	50	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	0		50	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	
	51	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(성매매 알선 및 가담)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	0		51	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(성매매 알선 및 가담)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	
	52	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	0		52	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	
53	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코드, 프로그램을 유통시켜 큰 피해를 준 학생	0	53	바이러스 및 각종 악성코드, 프로그램을 유통시켜 큰 피해를 준 학생			
8조 기타	55	공공 시설물,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	0	8조 기타	55	공공 시설물,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	
	56	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	0		56	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	

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
제18조 (이의제기)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

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
제18조 (이의제기)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

현 행	개 정 안
<p>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, <u>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,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 (생활교육 내용의 통보)</p> <p>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·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</p> <p>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 (생활교육 내용의 통보)</p> <p>① 학교장은 <u>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 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</u>,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·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